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공상총국의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 4월 1일부터 시행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관리 잠행방법」(이하 '방법')이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바,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유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로 2년 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허위광고로 2년 내에 3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5년 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9가지로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에서는 해당 리스트에 기록된 기업들에 대하여 리스트에 기록된 날로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엄중한 불법 및 신용불량 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면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시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적법 경영을 촉구하는 데 의미를 두는 한편 엄중한 불법 행위를 행한 기업 및 신용불량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빈발하는 주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인 결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모집행위관리방법 발표

중국 펀드업협회는 「사모투자펀드 모금행위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여 사모펀드의 모집주체, 모집절차, 모집의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방법'은 사모펀드모금의 기관주체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나 펀드판매기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우선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사모기관의 기본정보를 홍보하고, 특정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을 특정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모펀드 상품

을 설명한 후, 마지막 순서로 적격투자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펀드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소비자 관련 공익소송 사법해석 발표

소비자 관련 공익소송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성실한 소비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소비자권익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소비(자)민사공익소송사건 심리 시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석'은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인 구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 공익소송의 원고 자격, 적용 범위, 소비 영역에서의 사회공공이익의 유형화, 관할법원, 원고 처분권의 제한, 공익소송과 사익소송 간의 관계, 청구권 유형 및 책임 부담 방법, 기판력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해외 비정부기구의 중국 경내 활동 관리법 제정

「해외 비정부기구의 중국 경내 활동 관리법」(이하 'NGO관리법')이 4월 28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NGO관리법'은 7장 54개 조항으로 총칙, 등기 및 신고, 활동규범, 편의를 위한 조치, 감독 관리, 법률적 책임 및 부칙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NGO관리법'에서는 '해외 비정부기구'에 대하여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싱크탱크 등 비영리성격의 비정부 사회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NGO관리법'에 의하면 중국은 해외 비정부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현급 이상의 정부 관련 부서에 해외 비정부기구를 위한 정책자문, 활동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